

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

1. 우리 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명령 하였으나,
2. 수취인부재, 이사불명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(폐차)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 고 기 간 : 2026. 8. 24. ~ 2026. 9. 22.(30일간)

나. 강제처리에정일 : 공고기간 만료 이후

다. 차량 보 관 장 소 : 은광폐차장 (☎061-544-0078)

라. 강제처리(폐차)대상 : 75다2472, 48라4832, 52서9237, 91러2014, 05나7619

마. 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

- 1)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(자진회수 및 폐차)할 경우 제86조·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·제22조에 따라 통고처분(20~30만원)을 받게 되며,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처리한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하고, 자동차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·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·제22조에 따라 통고처분(100~150만원)을 받게 됩니다.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- 2)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 권리행사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.
- 3)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품도 함께 처분됩니다.

바. 기타사항 :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교통행정팀(☎ 061-540-346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8월 24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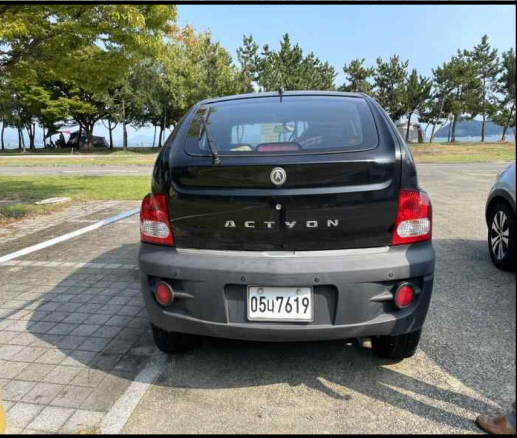
진 도 군 청



강제폐차 처리 대상 내역(5대)

연 번	차 량		소유자	차량 사진	방치장소
	차 명	차량번호	성명		
1	에어로타운 (터보)	75디2472	김○구		진도읍 공설운동장 축구장 옆
2	티뷰론	48라4832	박○현		진도읍 공설운동장 축구장 옆
3	SM520택시	52서9237	(주)청○모 터스		진도읍 공설운동장 축구장 옆

진도군 공고 제 2026-734 호

4	포터초장축 슈퍼캡	91러2014	백○선		진도경찰서 뒤편 주차장
5	액티언	05나7619	기○웅		진도읍 교동리 149 (공영주차장)